

대전지방법원 2024. 12. 5 선고 2024가단7489 판결 [건물명도]

## 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12. 5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,864,4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8. 1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1).

## 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 판결)